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중기지방재정계획

□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❖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3,831	3,889	3,949	4,003	4,058	19,730	1.40
자 체 수 입	269	271	272	273	275	1,360	0.50
이 전 수 입	3,044	3,096	3,149	3,197	3,244	15,730	1.60
지 방 채	0	0	0	0	0	0	0.00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518	522	528	533	539	2,640	1.00
세 출	3,831	3,889	3,949	4,003	4,058	19,730	1.40
경 상 지 출	631	634	642	656	674	3,237	1.70
사 업 수 요	3,200	3,255	3,307	3,347	3,384	16,493	1.40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▶ 연평균 증가율 = $\left[\frac{\text{최종연도}}{\text{기준년도}} \right]^{\frac{1}{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} - 1 \times 100$

4-2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억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81	217
여성정책추진사업	28	44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44	152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9	21

▶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[바로가기 기재](#))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3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 3(1,2,3 중 하나)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354,396	4,226	3

▶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❖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4,226	
안전건설과	순창경찰서~옥천교 도로개설사업	1,500	신규사업
"	군 계획도로(소로1류2호선 및 2류8호선)개설사업	1,300	"
"	양지천 정비사업	60	"
"	오수천 정비사업	70	"
"	계전소하천 정비사업	200	"
"	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(유휴지 꽃 식재)	15	계속사업
경제교통과	버스승강장 비가림 설치사업	100	신규사업
문화관광과	섬진강관광자원개발사업(주차장)	500	계속사업
농촌개발과	소규모주민숙원사업(풍산면)	20	신규사업
환경수도과	마을상수도 관리전환 및 물탱크 철거	11	"
"	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	300	계속사업
농축산과	애호박 관비 및 운반시설 지원사업	145	신규사업
체육문화시설관리 사업소	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(구림 장안마을)	5	"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바로가기 기재)

4-4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단위 : 개, 백만원)

부서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 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20	92	136	201	343,138	320,558	22,580
기획실	1	5	11	8	9,189	13,046	-3,857
주민복지실	1	6	7	22	52,617	47,968	4,649
행정과	1	7	10	22	8,952	11,899	-2,947
안전건설과	1	6	6	9	28,779	28,491	289
경제교통과	1	6	6	11	10,943	7,072	3,870
문화관광과	1	5	8	7	10,486	8,271	2,215
민원과	1	5	7	8	748	1,106	-357
농촌개발과	1	5	9	9	30,362	28,323	2,039
산림공원과	1	5	14	14	13,962	11,516	2,446
환경수도과	1	5	19	19	16,346	13,097	3,249
재무과	1	6	11	11	59,618	55,064	4,555
보건사업과	1	4	8	8	5,757	3,994	1,763
의료지원과	1	3	5	5	1,149	900	249
생명농업과	1	3	6	6	11,144	8,176	2,968
농축산과	1	8	15	15	44,474	43,740	734
농업기술과	1	4	6	6	6,931	6,409	522
건강장수사업소	1	2	8	8	6,283	9,049	-2,767
장류사업소	1	3	6	6	12,483	8,642	3,841
체육문화시설사업소	1	3	4	4	7,181	8,517	-1,336
의회사무과	1	1	3	3	748	724	24
순창읍	0	0	0	0	957	785	173
인계면	0	0	0	0	379	367	13
동계면	0	0	0	0	450	459	-9
적성면	0	0	0	0	350	342	9
유등면	0	0	0	0	283	286	-3
풍산면	0	0	0	0	383	376	7
금과면	0	0	0	0	336	332	4
팔덕면	0	0	0	0	470	346	124
북흥면	0	0	0	0	435	427	9
쌍치면	0	0	0	0	478	456	23
구립면	0	0	0	0	463	379	84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5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4.82 (6.31)	63.97 (55.46)	18.16	29.65	51.62	202.71

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89	48	-9
	부단체장		32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175	140	-35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149	59	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66	
	의원국외여비		24	
지방보조금		31,846	18,638	-13,208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1,039	1,039	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	1,041	-
공무원 일·숙직비		50천원	50천원	-

- ▶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s.go.kr>)